

## 민일 민사소송법(개정1판) 정오표(2025.02.24. 기준)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65	02 민사법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경우</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적용</th> <th style="width: 10%;">1심</th> <th style="width: 10%;">2심</th> <th style="width: 10%;">3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 사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이 아닌 사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의 사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경우	구분	적용	1심	2심	3심	단독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이 아닌 사건						합의 사건							02 민사법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5%;">경우</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적용</th> <th style="width: 10%;">1심</th> <th style="width: 10%;">2심</th> <th style="width: 10%;">3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 사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송목적의 값이 <b>5억원</b> 이하인 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이 아닌 사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의 사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경우	구분	적용	1심	2심	3심	단독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b>5억원</b> 이하인 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이 아닌 사건						합의 사건						
	경우	구분	적용	1심	2심	3심																																						
단독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이 아닌 사건																																											
합의 사건																																												
	경우	구분	적용	1심	2심	3심																																						
단독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b>5억원</b> 이하인 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이 아닌 사건																																											
합의 사건																																												
P26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쟁점</td> <td>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td> </tr> <tr> <td colspan="2">                     1. 일반                      2. 문서 부제출 또는 훼손·멸실 시의 제350조의 해석                      (1) 학설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 판례의 태도이다.                 </td> </tr> </table>	쟁점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	1. 일반 2. 문서 부제출 또는 훼손·멸실 시의 제350조의 해석 (1) 학설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 판례의 태도이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쟁점</td> <td>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td> </tr> <tr> <td colspan="2">                     1. 일반                      2. 문서 부제출 또는 훼손·멸실 시의 제350조의 해석                      (1) <b>학설(제목만 삭제)</b>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 판례의 태도이다.                 </td> </tr> </table>	쟁점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	1. 일반 2. 문서 부제출 또는 훼손·멸실 시의 제350조의 해석 (1) <b>학설(제목만 삭제)</b>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 판례의 태도이다.																																			
쟁점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																																											
1. 일반 2. 문서 부제출 또는 훼손·멸실 시의 제350조의 해석 (1) 학설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 판례의 태도이다.																																												
쟁점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당사자																																											
1. 일반 2. 문서 부제출 또는 훼손·멸실 시의 제350조의 해석 (1) <b>학설(제목만 삭제)</b>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 판례의 태도이다.																																												
P390	주의할 것은, ① 역으로 청구의 질적 감축 또는 양적 감축은 청구의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의할 것이되,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 원고에 유리한 소의 일부 취하로 봄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므로(대판 1993.9.14. 93누9460),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	주의할 것은, ① 역으로 청구의 질적 감축 또는 양적 감축은 청구의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의할 것이되, 이것이 분명치 않은 경우 원고에 유리한 소의 일부 취하로 봄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므로(대판 1993.9.14. 93누9460), <b>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다.</b>																																										